

인천지방법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4타경565010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1. 12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원채연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4.05.08. 가압류			배당요구종기	2024. 12. 27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차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김유희	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임차권 자	2022.02.25.	240,000,000		2022.02.25.	2022.01.21.		
<비고> 김유희:주택임차권자로서 임차권등기일은 2024.03.27.임.	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을구 순위번호 3번 주택임차권등기(이 사건 매각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아니할 경우 매수인이 그 부담을 인수함)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4타경565010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303-1, 303-168

휴프타임

[도로명주소]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45번길 44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14층

업무시설, 공동주택

지하1층 495.5609m²

1층 297.537m²

2층 493.5876m²

3층 493.5876m²

4층 493.5876m²

5층 493.5876m²

6층 493.5876m²

7층 493.5876m²

8층 493.5876m²

9층 493.5876m²

10층 493.5876m²

11층 493.5876m²

12층 454.3846m²

13층 454.3846m²

14층 454.3846m²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3층305호

철근콘크리트구조 83.1925m²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303-1

대 461.7m²

2. 동 소 303-168

대 330.1m²

대지권의종류 : 1, 2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, 2. 791.8분의 11.8698

감정평가액 243,000,000

회차 기 일 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보증금

1회 2026.02.09 14,008,000 1,400,800

2회	2026.03.24	9,806,000	980,600
3회	2026.04.23	6,864,000	686,400
4회	2026.05.28	4,805,000	480,500
